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49 발의연월일: 2024. 11. 18.

발 의 자:김태호·이종배·엄태영

서천호 · 김종양 · 윤영석

임이자 · 서범수 · 진종오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·교육비·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.

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,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 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 (안 제24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11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1) 「한국국제교류재단법」에 따른 한국국제교류재단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1)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 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 ①	제24조(기부금의 손금불산입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	②
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	
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	
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	
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	
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	
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	
되,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	
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	
한다.	 .
1. 특례기부금: 다음 각 목의	1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	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다음의 기관(병원은 제외	라
한다)에 시설비·교육비·	
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	
출하는 기부금	
1) ~ 10) (생 략)	1) ~ 10)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11) 「한국국제교류재단
	법」에 따른 한국국제교류
	<u>재단</u>

 마.・바. (생 략)
 마.・바. (현행과 같음)

 2. (생 략)
 2. (현행과 같음)

 ③ ~ ⑥ (생 략)
 ③ ~ ⑥ (현행과 같음)